

초록번호 17-3

제 목	국 문	의료기관의 조세에 대한 법리적 해석		
	영 문	A Study on Corporate Tax Liability of Nonprofit Health Corporat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 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Min Park <i>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i>		
분 야	보건관리(의료법)		발 표 자	박 민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인의 설립근거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를 알아보고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과 관련된 법인세법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의료법인의 사명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법인세법은 의료산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세감면법을 통하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법인세규정을 미국의 입법예와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법인세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3. 연구결과

비영리법인의 조직을 갖추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주체에 따라 그 조세부담이 각각 다르다. 즉 학교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수익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반하여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반하여 의료법인은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times 7\% + \text{자기자본}(50\text{억 한도}) \times 2\%$ 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4. 고찰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기타 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며, 국민의 복지후생, 국토의 방위, 치안의 유지, 경제 및 사회의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지출된다. 현대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하는 임무는 야경국가 시대의 국가의 임무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교육사업·사회봉사·의료사업·복지사업 등은 아무리 많이 제공되어도 모자란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는 단연한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나 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즉 수익과 지출이 비영리·공익목적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를 염격한 감사 또는 심사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